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2. 8. 23 선고 2022가단610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2. 6. 28.

판 결 선 고 2022. 8.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1. 3.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24,031,7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031,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아버지 B은 2018년도 사업소득이 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상주세무서장은 2020. 12. 21. B에게 2018년도 종합소득세 21,841,960원(납세의무 성립일 2018. 12. 31.)을 고지하였다.

나. B은 2021. 3. 24.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고, 2021. 3. 29. 피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증여 당시 B은 원고에 대한 위 체납채무 외에 C조합에 대한 34,899,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의 사해의사 및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1) 원상회복의 방법: 가액배상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5. 1. 28. C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고, 같은 날 C조합에 채권최고액을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증여 이후인 2021. 6.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고 같은 날 피고가 C조합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2) 가액배상의 액수

다음으로 가액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1. 1. 1.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은 132,000,000원이고,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4,899,000원인 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액은 24,031,790원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액에서 위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조세채권액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액배상액은 그중 작은 액수인 원고의 채권액 24,031,79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4,031,79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4,031,7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조인

별지